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1

심의일자	2018. 10.26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형 재개발사업 / 용산구 동자동 15-1		
의결번호	2018-구조18-3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-서면보고
〔심의 내용〕 구조안전 심의			
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(서면)하시기 바랍니다.			
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〈 구조안전 분야 〉			
○ 노풍도 B로 적용하면 풍하중을 낮추어 설계하게 되므로 서측, 북측, 동측(하향풍 영향), 남측 도로를 고려하여 C로 적용·재검토 바람.			
○ 풍동실험결과의 적용시 풍동실험조건 및 상시규칙(1시간 평균조건), 데이터의 분석 조건, 풍하중의 구조축 방향 조합을 명확히 하여 검토 바람.			
○ 기본 풍속을 서울 기상대 관측자료로 사용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확인 바람.			
○ SHN 강재도 압연 H형강이며, 이음판, 덧판 스틸라이스 판재의 경우 SN재 규격이 되고, SN재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조기술사의 확인에 의해 SM490 이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기하기 바람.			
○ 합성기둥 단면 내부철근 배근 주근의 좌굴방지근 추가 바람.			
○ 시공도 작성시 하중 관련사항을 명확히 하기 바람.			
○ 강구조 상세 확인바람(기둥·보 단부 접합부)			
○ 지하외벽 수직철근의 휨 균열제한 간격을 검토 바람.			
○ 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(30층이상, 100m이상의 건축물)에 해당되므로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라 공사중 관계기술자협력에 대한 수행계획을 수립하기 바람.			
○ 현재 구조로 견딜 수 있는 지하수위를 구조 도면에 명기하여 유지 관리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			
○ 신기술을 사용한 경우 본 검토 내용에 자세히 명기하기 바람, SPS공법, 기초 보강 등 기술적으로 안전한 지 확인 바람.			
○ 굴착심도 및 대지 경계에 근접하여 굴착함에 따라 경암부분의 미진동 발파시 인접 건물의 안정성과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 및 공법 반영하기 바람. 끝.			

2018.10.26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